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확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시·도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각·매립처분량은 시·도지사에게 부과
· 징수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의 실제 소각·매립 처분량에 소각잔재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곱
하여 산정하는 값(이하 이 조에서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이라 한
다)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의 산정 및 영 제25조제3항
에 따른 시·도별 교부비율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시·도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다.</u> <u>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각·매립 처분량은 시·도지사에게 부과·징수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의 실제 소각·매립 처분량에 소각잔재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값(이하 이 조에서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이라 한다)으로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의 산정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도별 교부비율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